

의안번호	제 634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6월 2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4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6월 26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 구체화
-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·운영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하부협의체의 대상 및 구성형태 구체화(안 제5조제5항)
-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와 운영 주체, 사무국 직원 임용 등 사무국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하부협의체와 사무국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지원 근거 신설(안 제6조의2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2조의1”을 “제2조의2”로 하고, 제2조의2(중전의 제2조의1)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5항 “하부협의체”를 “의제별·업종별 분과·특별위원회(이하 “하부협의체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사무국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부서
2.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

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장과 직원은

위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사무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서의 장이나 위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.

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,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.

⑤ 그 밖에 사무국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도지사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와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국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한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사무이관 및 사업비 집행 등 이미 수행한 업무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노사민정 협의회 사무국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의1(위원의 임기)</u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협회의 운영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<u>하부협의를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하부협의체의 구성·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6조(하부협의체 지원) 도지사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<u>제2조의2(위원의 임기)</u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삭제)</p> <p>제5조(협회의 운영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의제별·업종별 분과·특별위원회(이하“하부협의체”라 한다)를 ----- -----</p> <p><u>제6조(사무국) ① 위원장은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충청북도 노사업무 담당부서</p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347 1621 587 1662"><신설></p>	<p data-bbox="820 293 1367 389">2. <u>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</u></p> <p data-bbox="794 477 1367 853">③ <u>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장과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사무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서의 장이나 위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 data-bbox="794 943 1367 1189">④ <u>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, 소속 직원을 지도 감독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794 1279 1367 1525">⑤ <u>그 밖에 사무국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 <p data-bbox="775 1615 1367 1986">제6조의2(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도지사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와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
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대상 및 구성형태를 구체화하고,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을 총괄수행하는 사무국 설치·운영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안 제6조 및 제6조의2 사무국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 운영 및 사업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6조의2(지역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
 - 도지사는 제5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와 제6조제2항과 제6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노사민정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추계 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신설에 따른 사무국 운영 및 사업비 계상
- 나. 추계의 전제 : 사무국직원 인건비(상근 1), 사무국 운영·사업비
- 다. 추 계 결 과 : 사무국 운영 시부터 매년 1억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기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 지원 사업보조금을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으로 편성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	계
세 입	-	-	-	-	-	
세 출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인 건 비	28,600	28,600	28,600	28,600	28,600	143,000
업무추진비	4,800	4,800	4,800	4,800	4,800	24,000
사무국운영비	18,000	18,000	18,000	18,000	18,000	90,000
사 업 비	48,600	48,600	48,600	48,600	48,600	243,000
재원 조달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지방세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특별회계						
시·군비						
기 타 (민간 자부담)						

관련법령 발췌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 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

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 10조 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조(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